「등불쌤 학원」 해경학개론 각론 추록본

02 작전위기관리

추록본

2 통합방위기구 운용 [P.69]

▌통합방위협의회

▌제4조(중앙 통합방위협의회)

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중앙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교육부장관, 외교부장관, 통일부장관, 법무부장관, 국방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국가보훈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산업통상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, 성평등가족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중소벤처기업부장관, 기획예산처장관, 국무조정실장, 법제처장,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.

*** 개정사항▌**[25.10.1.시행]
- 기획재정부장관 → 재정경제부장관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→ 산업통상부장관
- 환경부장관 →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- 여성가족부장관 → 성평등가족부장관
- 기획예산처장관 추가

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

▌국가테러대책위원회(제5조) [22간부]

▌시행령 제3조(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구성) [P.110]

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재정경제부장관, 외교부장관, 통일부장관, 법무부장관, 국방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산업통상부장관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국가정보원장, 국무조정실장, 금융위원회 위원장,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, 대통령경호처장, 관세청장, 경찰청장, 소방청장, 질병관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.

***개정사항▌**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→ 산업통산부장관 [25.10.01 시행]
- 기획재정부장관 → 재정경제부장관 [26.01.02 시행]
- 환경부장관 →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[25.10.01 시행]

문제 개정

06. 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」에 규정된 '지역 테러대책협의회'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▌해경실무 [P.118]

① 지역의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조·조정을 위하여 설치한다.

②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관할 시·도경찰청장이 된다.

③ 법무부·보건복지부·기후에너지환경부·국토교통부·해양수산부·해양경찰청·국가정보원의 지역기관, 식품의약품안전처, 관세청·대검찰청·경찰청·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역기관, 지방자치단체, 지역 군·기무부대의 대테러업무 담당 국·과장급 직위의 자가 위원이 된다.

④ 지역의 대테러업무 수행실태의 분석·평가 및 발전방안의 강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.

정답▌ ②

해설▌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국정원 관할지부장이다.

채용시험 기출 문제 추가

30. 다음 중 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」상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장인 해양경찰청장이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▌25년 하반기 경위공채

① 해양경찰청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건 현장의 대응 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.
② 현장지휘본부장은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이 담당한다.
③ 현장지휘본부장은 테러의 양상·규모·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·진압·구조·구급·소방 등에 필요한 전문조직을 직접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④ 현장지휘본부장은 현장에 출동한 관계기관의 조직(대테러특공대, 테러대응구조대,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 및 대테러합동조사팀을 포함)을 지휘·통제한다.

정답▌ ②
해설▌
②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대책본부의 장이 지명한다.

31. 다음 중 「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 규칙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▌25년 하반기 경위공채

① '비상상황'이란 해양주권·안보·안전·치안·오염과 관련하여 중요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다수의 경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.
② '해상경계강화'란 관내 취약요소에 대한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정보교환을 철저히 하는 등 즉응태세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.
③ '지휘통제선상 위치'란 지휘관이 유사시 통신으로 즉시 상황지휘가 가능하고 1시간내 상황지휘 및 상황근무가 가능한 위치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.
④ '비상대기 태세 유지'란 모든 공무원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비상소집이 가능한 위치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.

정답▌ ④
해설▌

▌비상대기 태세 유지
지휘관을 제외한 공무원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비상소집이 가능한 위치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.

32. 다음 중 「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칙」에 따른 상황접수 부서를 나타낸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사이드▌25년 하반기 경위공채

	위성조난신호(EPIRB)	V-PASS SOS	긴급신고전화	VHF-DSC 등 무선조난통신
①	해양경찰청 상황실	해양경찰서 상황실	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	해양경찰청 국제안전통신센터
②	해양경찰청 국제안전통신센터	해양경찰서 상황실	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	해양경찰청 상황실
③	해양경찰청 상황실	해양경찰서 상황실	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	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
④	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	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	해양경찰서 상황실	해양경찰서 상황실

정답▌ ①
해설▌

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

▌제16조(접수)
① 긴급신고전화에 의한 상황신고는 관할에 관계 없이 최초 신고를 받은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접수한다.
② 위성조난신호(EPIRB · ELT)는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접수하고, VHF-DSC 등 무선조난통신은 해양경찰청 국제안전통신센터, V-PASS SOS는 해양경찰서 상황실에서 접수한다.
③ 일반전화 신고, 방문신고 또는 그 밖의 통신망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는 최초 인지한 기관 · 부서에서 접수한 후 해당 관서 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.

33. 다음 중 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상 규정된 내용이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보안기준 내용과 다를 경우, 적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▌25년 하반기 경위공채

① 국제협약의 보안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.
② 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.
③ 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 내용을 우선 적용하되, 국제협약의 보안기준이 해당 법률의 보안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국제협약을 적용한다.
④ 국제협약의 보안기준을 우선 적용하되, 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

내용이 국제협약의 보안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.

정답 ④

해설

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보안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**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**. 다만,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보안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「등불쌤 학원」 해경학개론 각론 추록본

03 구조안전론

추록본

문제 개정

23. 다음 중 「통합방위법」 상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가장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? [P.150]

▌23년 경사 승진

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정경제부장관
② 국방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
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
④ 국방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

정답▌ ③

해설▌

▌통합방위사태선포 건의

1.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: 국방부장관
2.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: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

제2장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

▌목적(제1조)

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「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1조 및 「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▌용어의 정의(제2조)

▌지역경찰활동

지역사회의 주민과 기관 · 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원사항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치안활동에 반영하는 해양경찰 활동을 말한다.

▌연안구조정

연안해역의 안전관리와 해상치안활동을 위해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배치하여 운용하는 선박을 말한다.

▌교대근무

근무조를 나누어 일정한 계획에 의한 반복 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.

▌일근

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제9조제2항에 규정된 근무형태를 말한다.

▌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(근무시간) 제2항

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,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.

▌비번

교대근무자가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.

▌휴게시간

교대근무자 또는 연일 근무자 등이 근무 중 청사에서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한다.

▌현장업무포털시스템 [26.2.09.신설]

파출소의 기본현황, 근무일지, 각종 통계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.

❌ (구) 법령

▌대행신고소

~~"대행신고소"란 「어선 출입항신고 관리규칙」 제2조제3호의 신고기관을 말한다.~~ [26.2.09.폐지]

☑ 대행신고소 폐지 [26.2.09.폐지]

▌연안구조장비

~~연안해역의 안전관리와 해상치안활동을 위해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배치하여 운용하는 연안구조정 및 수상오토바이 등을 말한다.~~ [26.2.09.삭제]

☑ 연안구조장비는 제37조에 새롭게 규정되었다.

연안구조장비란 연안구조정 및 동력구조보드를 말한다.

▌적용범위(제3조)

이 규칙은 파출소 및 출장소(이하 "**파출소등**"이라 한다)의 관리운영 및 지역경찰활동 등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.

1 파출소

▌설치 및 폐지(제4조) [24간부]

① **지방해양경찰청장**은 선박 출입항, 해양종사자, 관리선박, 사건사고 등 치안수요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**해양경찰청장의 승인**을 받아 파출소를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파출소 설치 및 폐지는 연 1회 하반기에 실시하며, 파출소의 설치기준은 「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1조제1항 및 「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, 설치 및 폐지 절차 등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.

❌ (구) 법령

② 제1항에 따른 파출소 설치 및 폐지는 연 1회 하반기에 실시하며, 파출소의 ~~설치기준~~, 설치 및 폐지 절차 등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치안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관할구역 내 파출소와 출장소의 위치를 상호 변경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위치를 상호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 [26.2.9.개정]

***개정사항▌** 변경한 경우 → 변경할 경우 [26.2.9.개정]

☑ 파출소 및 출장소 설치·폐지, 파·출장소의 관할구역 및 명칭지정도 전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한다.

▌제5조(소속 및 관할)

① 파출소는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둔다.

② 파출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**지방해양경찰청장**이 정한다.

▌제6조(파출소의 업무)

파출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범죄 예방 · 단속 및 안전 · 치안 정보 수집
2. 다중이용선박 및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
3. 선박 출입항신고 관리
4. 연안해역 안전관리
5. 각종 해양사고 예방 및 **초동조치**
6. 지역경찰활동
7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을 위한 행정지원

(그 밖에 파출소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처리 ×)

▌파출소장(제7조)

① 파출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경찰관을 지휘·감독하기 위해 파출소장을 둔다.

② 파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▌파출소장의 직무 [26.2.9.개정]

1. 관내 안전·치안 분석 및 대책 수립
2. 파출소 및 소속 출장소의 시설, 예산, 무기·탄약 및 장비의 관리
3. 안전·치안에 대한 대민홍보 및 협력활동
4. 관내 순찰 및 상황 지휘
5. 소속 출장소에 대한 월 1회 이상 지도점검. 다만, 도서지역 출장소는 기상, 선박운항 등 입도여건을 고려하여 점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.
6. 소속 경찰관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휘·감독
7. 그 밖에 해양경찰서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처리

(지역경찰활동X)

✕ (구) 법령

② ~~파출소장은 경감으로 보한다~~. [26.2.9.삭제]

▌파출소장의 직무

6. ~~관내 대행신고소에 대한 지도 및 교육~~ [26.2.9.폐지]
7. 소속 경찰관의 ~~근무지정, 순찰 지시~~ 등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휘·감독

▌파출소의 하부조직(제8조) [26.2.9.개정]

① 파출소에는 교대근무로 운영하는 복수의 순찰구조팀을 둔다.

② 순찰구조팀의 구성인원은 관내 안전·치안수요 및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파출소장이 정한다.

✕ (구) 법령

② ~~순찰구조팀의 수~~와 구성인원은 관내 안전·치안수요 및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파출소장이 정한다. [26.2.9.개정]

▌순찰구조팀(제9조)

① 순찰구조팀은 범죄·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현장의 치안 및 안전관리 활동을 담당한다. [26.2.9.개정]

✕ (구) 법령

① 순찰구조팀은 범죄·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현장의 치안 및 안전관리 활동을 담당하며, ~~순찰구조팀장은 파출소장이 지정한다~~.

② 순찰구조팀장은 파출소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안전·상황·구조부서에서 근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**파출소장이 지정한다**. [26.2.9.신설]

③ 순찰구조팀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▌순찰구조팀장의 임무

1. 순찰구조팀원에 대한 일일 근무편성 및 지휘·감독
2. 관내 중요 사건·사고 발생 시 현장 지휘
3. 근무교대 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의 인수인계 확인
4. 순찰구조팀원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
5. 파출소장 부재 시 업무 대행
6. 그 밖에 파출소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처리

(안전·치안에 대한 대민홍보 및 협력활동 ×)

✕ (구) 법령

▌순찰구조팀장의 임무

2. ~~관내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현장 상황처리~~
3. ~~연안구조정, 순찰차 등 보유장비 관리~~
4. ~~지역경찰 활동~~

④ 순찰구조팀장을 보좌하고 순찰구조팀장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순찰구조팀별로 부팀장을 둘 수 있다. [26.2.9.신설]

▌구조거점파출소(제10조)

① **지방해양경찰청장**은 해양경찰구조대와의 거리, 사고발생빈도, 선박통항량, 다중이용선박 등 안전·치안 여건을 고려하여 **해양경찰청장의 승인**을 받아 구조거점파출소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**해양경찰서장**은 사고 빈발 해역에서의 초기 구조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구조거점파출소에 잠수구조요원을 배치해야 한다. [26.2.9.신설]

✕ (구) 법령

▌제10조(구조거점파출소)

① ~~이 조에서 "구조거점파출소"란 사고 빈발 해역을 관할하고 있으나 해양경찰구조대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초기 구조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잠수구조요원을 배치한 파출소를 말한다.~~

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구조대와의 거리, 사고발생빈도, 선박통항량, 다중이용선박 등 안전·치안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구조거점파출소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 [제1항으로 이동]

▌제11조(지휘 및 감독)

파출소등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해양경찰서장: 파출소등 운영에 관한 총괄 지휘·감독
2. 해양경찰서 각 과장: 해양안전과장(강릉해양경찰서의 경우 해양안전방제과장으로 한다. 이하 같다) 협조를 받아 각 과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파출소등 업무에 대한 관리·감독
3. 파출소장: 파출소등의 시설·장비·예산 및 소속 경찰관의 근무에 관한 제반사항 지휘·감독
4. 순찰구조팀장: 근무시간 중 순찰구조팀원에 대한 지휘·감독

✕ (구) 법령

▌지휘 및 감독(제18조)

파출소등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▌지휘 및 감독

1. 해양경찰서장 : 파출소등 운영에 관한 총괄 지휘·감독
2. 해양경찰서 각 과장 : 해양안전과장 협조를 받아 각 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파출소등 업무에 대한 관리·감독
3. 파출소장 : ~~파출소등의 근무에 관한 제반사항 지휘·감독~~
4. 순찰구조팀장 : 근무시간 중 순찰구조팀원에 대한 지휘·감독

2 출장소

▌제12조(설치 및 폐지)

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 제3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출장소를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출장소의 설치 및 폐지 절차 등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.

▌제13조(소속 및 관할)

① 출장소는 파출소장 소속으로 두며, 출장소의 인원·장비·예산 등은 파출소에서 통합 관리한다.

② 출장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.

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

▌제31조(파출소 등)

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둘 수 있다.

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출장소를 둘 수 있다.

③ 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·위치와 관할구역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.

▌제14조(출장소장)

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▌출장소장의 직무

1. 선박 출입항신고 관리
2. 각종 해양사고 초동조치
3. 지역경찰활동
4. 방문 민원 접수 및 처리 [26.2.9.신설]
5. 출장소 시설 및 장비 관리
6. 소속 경찰관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휘·감독
7. 그 밖에 파출소장이 지시한 업무처리 등

✕ (구) 법령

▌출장소장의 직무

5. ~~관내 대행신고소에 대한 지도 및 교육~~
6. ~~무기·탄약 관리~~
7. 소속 경찰관의 ~~근무지정, 순찰 지시 등~~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휘·감독

☑ 출장소의 업무는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.

▌제15조(비상주 출장소의 운영)

① 해양경찰서장은 안전·치안수요 및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주 근무자를 두지 않는 탄력근무형 출장소와 순찰형 출장소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탄력근무형 출장소 및 순찰형 출장소에는 출장소장을 따로 정하지 않고, 관할 파출소의 **순찰구조팀장**이 일일 근무 편성한 경찰관이 출장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. (파출소장X) [25하]

▌제16조(탄력근무형 출장소)

① 탄력근무형 출장소는 관할 파출소의 소속 경찰관이 출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한 후에 파출소로 복귀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.

② **파출소장**은 지역의 안전·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근무형 출장소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 [26.2.9.개정]

***개정▌** 탄력근무형 출장소 근무시간 조정권자가 해경서장 → 파출소장

▌제17조(순찰형 출장소)

① 순찰형 출장소는 관할 파출소의 소속 경찰관이 출장소를 경유하여 순찰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.

② 파출소장은 안전·치안수요를 고려하여 순찰형 출장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순찰방법을 지시해야 한다.

3 근무

▌제18조(복장의 착용)

파출소등 소속 경찰관은 근무 중 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에 따른 근무복장을 착용해야 한다. # 근무복, 단화 등

다만, 해양경찰서장이 특별히 지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.

▌제19조(장비의 휴대 및 비치)

① 파출소등 소속 경찰관은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장비를 휴대해야 한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장비는 필요시에만 휴대한다.

▌경찰관 휴대 장비

1. 「무기·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」에 따른 권총 및 가스발사총 **(필요시)**
2. 「무기·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」에 따른 경찰봉 **(필요시)**
3.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

✕ (구) 법령

▌경찰관 휴대장비

1. 「무기·탄약류 등 관리 규칙」에 따른 권총 및 「진압장비 등 관리 규칙」에 따른 가스발사총 **(필요시)**
2. ~~「진압장비 등 관리 규칙」에 따른 진압장구~~
3.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

② 파출소등 소속 경찰관은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연안구조정 또는 순찰차에 비치해야 한다.

▌연안구조정 또는 순찰차 비치 장비

1. 구명줄, 구조 튜브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인명구조장비
2. 방제복, 유흡착제 및 폐기물 포대 등 오염방제장비
3. 음주 측정기, 수갑 및 폴리스라인 등 수사·단속장비

✕ (구) 법령

▌연안구조정 또는 순찰차 비치장비

1. ~~구명조끼~~, 구명줄 및 구조 튜브 등 인명구조장비

③ 파출소장 및 순찰구조팀장은 치안상황 및 임무수행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치해야 할 장비를 조정할 수 있다. [26.2.9.개정]

***개정사항▌** 장비 조정 권한자 : 순찰구조팀장 추가

✕ (구) 법령

③ ~~파출소장~~은 치안상황 및 임무수행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치 또는 휴대해야 할 장비를 조정할 수 있다.

▌제20조(근무방법)

① **지방해양경찰청장**은 관내 안전·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 제12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파출소의 **교대근무제를 정할 수 있다**. 다만, **도서지역** 파출소등의 교대근무제는 지역별 실정에 맞게 **해양경찰서장**이 정할 수 있다.

② **해양경찰서장**은 파출소등의 **근무방법**(교대시간, 근무주기 등을 포함한다)을 정할 때에는 안전·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취약시간에 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**해야 한다**.

③ 파출소장은 일근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도서지역 파출소장은 교대근무를 할 수 있다.

④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의 전반적 안전관리와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출소장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시간외·휴일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. [26.2.9.개정]

✕ (구) 법령

④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의 전반적 안전관리와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파출소장에게 ~~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황대거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~~.

⑤ 순찰구조팀 및 출장소 근무 경찰관은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.

⑥ 혹서기 순찰 등 야외 활동은 별표 1의 폭염 단계별 근무지침에 따른다. # 폭염주의보, 폭염경보

▌제21조(근무교대 방법)

근무교대는 매일 근무시작 전 **30분 내**에서 파출소장 또는 출장소장 주관으로 교대근무자 간 주요 처리사항, 중요업무 지시사항, 장비 등을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.

▌제22조(근무의 종류)

파출소등의 근무는 행정근무, 상황근무, 순찰근무 및 기타근무로 구분한다.

***개정사항** ▌대기근무 삭제 [26.2.9.개정]

▌제23조(행정근무)

행정근무를 지정받은 경찰관은 파출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▌행정근무자의 업무

1. 문서의 접수 및 처리
2. 시설·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
3. 각종 현황, 통계, 자료 등 관리
4. 그 밖에 파출소장이 지시한 행정업무

▌제24조(상황근무)

상황근무를 지정받은 경찰관은 파출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▌상황근무자의 업무

1. 관내 민간구조세력 등 관리 및 치안상황 파악·전파
2. 중요 사건·사고 및 수배사항 보고·전파
3. 민원 및 사건의 접수, 조사·처리
4.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, 수배자에 대한 보호·감시
5. 순찰 근무자와의 통신 유지 및 자체경비
6. 그 밖에 상황대응 및 처리에 관한 **지원** 업무

✕ (구) 법령

1. 민간구조세력 등 ~~관내 안전관리~~ 및 치안상황 파악 및 전파

▌제25조(순찰근무)

① 순찰근무는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파출소 또는 출장소의 관내를 돌아다니는 근무로서, 해상순찰과 해안순찰로 구분하며, **주로 해상순찰을 중심**으로 해야 한다.

② 순찰근무는 반드시 2명 이상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한 사유로 1명이 순찰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파출소장(순찰구조팀장)에게 보고하고, 그 사유를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. 다만, 상주 근무자를 두는 출장소는 예외로 한다. [26.2.9.신설]

③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은 순찰근무자에게 관내의 순찰경로, 순찰방법, 순찰 중 관심 가져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한다.

④ 순찰근무를 지정받은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▌순찰근무자의 업무 [26.2.9.신설]

1. 주민여론 청취 및 안전·치안 정보 수집
2. 선박 검문검색·음주측정 등 범죄 예방 및 위험발생 방지 활동
3. 다중이용선박 및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
4. 항포구·갯바위·갯벌 등 연안해역 안전관리
5. 그 밖에 상황대응 및 처리에 관한 업무

(지원업무X-상황대응 및 처리에 관한 지원업무는 상황근무자의 업무)

⑤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은 관내 사건사고 현황 분석, 조치사항 및 사건사고 유형별 처리요령과 관내 지리적·인문적 참고자료 등을 담은 순찰자료집을 **파출소, 순찰차 및 연안구조정 내에 비치**하여 근무자가 순찰근무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.

▌제26조(기타근무)

① 기타근무는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 이외의 근무 형태를 말한다.

② 기타근무의 근무내용 및 방법 등은 파출소장이 정한다.

▌제27조(일일근무 지정)

① 파출소장은 근무인원, 안전·치안수요 및 그 밖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일일근무를 지정해야 한다.

② 파출소장은 일일근무 지정 시 인원 부족으로 임무수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파출소 비번자 중에서 지원근무를 지정할 수 있다. [26.2.9.신설]

③ 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일근무를 기준으로 근무자별 근무 종류, 근무장소, 중점 근무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편성하여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.

✕ (구) 법령

② 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무시간 내 근무자의 개인별 근무종류, ~~근무시간~~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.

④ 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은 관내 안전관리 및 치안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.

▌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 숙지사항

1. 시간대별, 장소별 안전·치안수요
2. 안전사고 및 각종 사건사고 발생 현황
3. 순찰인력 및 가용 장비
4. 관할 해안선·해역 및 교통·지리적 여건 등

(국가중요시설 ×)

▌제28조(휴게 및 휴무 등 지정)

① 파출소등 근무자의 업무효율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안전·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.

▌휴게시간 부여

1. 3교대 근무 시 야간 3시간 이내 사용 가능
2. 2교대 근무 시 야간 4시간 이내 사용 가능
3. 도서지역 등 연일근무 시 주간·야간 각 4시간 이내 사용 가능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출소장은 업무수행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근무자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감축할 수 있다.

③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경찰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되, 통신기기를 휴대하고 신속한 출동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. [26.2.9.신설]

④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 근무자의 피로회복 및 사기진작을 위해 휴무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.

✕ (구) 법령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출소장은 업무수행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근무자의 ~~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~~.

▌제29조(경찰관 동원)

①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파출소등의 기본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출소등의 근무자를 동원할 수 있다.

▌근무자 동원 사유

1. 해상집단행동 또는 다중범죄의 진압
2. 대간첩작전 수행 또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등 비상사태
3. 경호경비 또는 각종 경기 대회의 경비
4. 중요범인 체포 또는 밀입국 등의 차단, 검거
5. 대규모 해양사고 또는 해양오염 등 발생
6. 그 밖에 다수 경찰관의 동원을 필요로 하는 행사 또는 업무

② 제1항에 따른 동원대상은 근무자를 원칙으로 하고,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번자를 동원할 수 있다.

③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비번자를 동원한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. TIP 둘중 하나만 지급

▌제30조(파출소등 지원근무)

①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의 안전·치안수요가 증가되어 근무인력이 부족한 경우 파출소등 **지원근무계획을 수립**하여 부족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② 파출소등 지원근무계획에 따른 지원근무자에게는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③ 파출소등의 지원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 및 근무지침은 해양경찰서장이 정한다.

▌제31조(선박 출입항신고 업무)

선박 출입항신고에 관한 업무는 「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선박안전 조업규칙」 및 「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」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. (선박입출항법 X)

▌제32조(민원 접수·처리)

① 파출소등에서 고소, 고발, 진정 및 탄원과 범죄 또는 피해신고에 관한 민원 등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양경찰서에 이송한다. 다만, 출장소에서 접수한 때에는 파출소장을 경유해야 한다.

② 파출소등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▌파출소 및 출장소 발급 민원서류

1. 선원 승선신고 사실 확인서
2. 선박 출항·입항신고 사실 확인서

③ 파출소등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, 주민등록증·여권·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발급해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발급신청서의 보존기간은 **3년**으로 하고, 파출소등에서 **2년**간 보관한 다음 소속 해양경찰서로 이관한다.

▌제33조(사건·사고 처리 및 수사)

① 사건·사고 처리 및 수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.

▌사건 사고 처리 및 수사 기준

1. 범죄현장의 보존, 증거의 수집, 피해현황과 범죄 실황조사 등 범죄 현장을 중심으로 필요한 초동조치와 수사
   (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X)
2. 해양경찰서의 수사관이 현장에 도착하면 상황을 **인계하고 사건 조사에 협조** (인계하고 기본근무 복귀 X)

② 해양사고 또는 해양오염사고의 신고를 받았거나 사고 발생사항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.

▌해양사고 또는 해양오염사고 처리 기준

1. **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**하고 동시에 현장으로 출동하여 인명과 재산피해의 확대 방지와 필요한 초동조치
   (초동조치를 할 수 있다 ×)
2. 사고현장 보존 및 조사
3. 해양경찰서 **구조 담당자 또는 해양오염방제 담당자** 등이 현장에 도착하면 상황을 인계하고 사고처리에 협조

③ **파출소장**은 경미한 사건·사고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사 또는 처리사항을 **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**해야 한다.

④ 변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사체의 발견 일시, 장소, 인적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을 확인해야 한다.

▌제34조(근무내용의 변경)

파출소등 근무자는 사건·사고 처리, 해양경찰관서 등의 출입, 물품구입 등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지정된 근무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파출소 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✕ (구) 법령

② ~~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자의 근무내용을 변경할 경우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근무일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.~~ [26.2.09.삭제]

4 장비 및 운용

▌제35조(순찰차)

①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은 순찰차를 안전관리 및 치안활동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.

② 순찰차의 활동구역은 관할 파출소 관내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**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**은 관내 치안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러 구역을 **통합하여 운영**할 수 있다.

③ 순찰차는 순찰 이외에 경찰관서 등의 출입, 출장소 지도감독 등 파출소등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순찰차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「해양경찰청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」에 따른다.

✕ (구) 법령

③ ~~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~~. [26.2.9.삭제]

▌제36조(연안구조정)

① 연안구조정은 임무수행을 위해 파출소등에 배치하며, 소속 **해양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아 파출소장이 운용**한다.

② **파출소장**은 순찰구조팀원 중 연안구조정 운용책임자를 지정한다.

③ 연안구조정의 활동구역은 파출소 관할해역으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해양사고 등 그 밖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**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** 관할해역 밖의 해역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④ **파출소장**은 연안구조정 운용책임자를 대상으로 연안구조정에 대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하고 관내 지형과 특성을 숙지시켜야 한다.

✕ (구) 법령

⑤ 파출소장은 ~~운용자 대상~~ 연안구조정에 대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하고 관내 지형과 특성을 숙지시켜야 한다.

⑤ **연안구조정 운용책임자**는 해상순찰 시 출입항을 포함하여 **1시간** 간격으로 파출소등에 위치 및 해상상황을 보고하고, **입항 후 지체없이** 연안구조정의 행동사항, 검문검색 등 중요 순찰결과를 **파출소장**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⑥ 연안구조정 운용책임자는 기상악화나 농무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**파출소장**의 승인을 받아 안전해역으로 피항 또는 양륙해야 한다. 다만,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후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.

⑦ **해양경찰서장**은 연안구조정의 계류장소가 파출소와 원거리에 있어서 신속한 출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연안구조정 운용자를 연안구조정 또는 연안구조정과 가까운 대기장소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▌제37조(연안구조장비 관리)

① 파출소장은 연안구조정 및 동력구조보드 등(이하 "연안구조장비"라 한다)의 고장 예방과 효율적인 장비 관리를 위하여 순찰구조팀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. [26.2.9.개정]

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.

▌관리책임자의 이행사항 [26.2.9.개정]

1. 장비설명서에 따른 계획정비 이행 및 기록관리
2. 연안구조장비의 보관 상태 및 관리 실태 점검
3.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항상 최상의 장비상태 유지
4. 기상 악화 등으로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 피항 또는 양륙, 도난 예방 등

✕ (구) 법령

▌관리책임자 이행사항

2. ~~계류색, 수밀상태, 거관실 발지 상태 및 해수 유입구(SEA CHEST) 밸브 등 확인~~
3. ~~워터제트식 추진기의 경우 해상 어물질에 의한 추진기의 흡입구가 막히지 않도록 어물질 제거~~

▌제38조(무기·탄약 및 장비 관리)

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은 근무교대 전 무기·탄약 및 순찰차, 연안구조장비 등 주요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.

✕ (구) 법령

파출소 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은 근무교대 전에 무기·탄약 및 순찰차, ~~연안구조정, 구조장비~~ 등 주요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.

▌제39조(다른 규칙의 준용)

무기·탄약 및 장비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「무기·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」, 「함정 운영관리 규칙」, 「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」, 「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5 인력관리 및 교육·평가

▌제40조(정원 및 현원 관리)

① **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**은 파출소등의 관할구역, 안전·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.

② **해양경찰서장**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파출소등 근무자의 **30퍼센트 이상**이 되도록 해야 한다.

1. 인명구조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
2. 구조 및 파출소 업무 관련 전문교육을 5년 이내 이수한 사람

✕ (구) 법령

② ~~지방해양경찰청장~~ 및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의 정원을 다른 부서에 우선하여 충원해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파출소등 근무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.

③ **지방해양경찰청장**은 파출소등의 인력 현황을 **연 2회** 점검하고,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인력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✕ (구) 법령

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파출소등의 ~~충원 현황~~을 연 2회 점검하고, ~~현원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별도의 충원 대책을 수립하여 서행해야 한다~~.

▌제41조(교육훈련)

① 해양경찰교육원장은 파출소등 소속 경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근무에 필요한 교과목을 편성한 전문과정을 운영해야 한다.

②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 소속 경찰관의 올바른 직무수행 및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.

③ 파출소등 소속 경찰관의 교육훈련의 종목·시간·방법 등은 「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」에 따른다.

▌제42조(평가와 포상)

해양경찰청장,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 소속 경찰관의 사기진작 및 구조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경찰관을 발굴하여 포상해야 한다.

✕ (구) 법령

~~②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해양경찰청 성과평가 및 우수파출소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파출소등의 업무실적과 교육·훈련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.~~ [26.2.9.삭제]

▌제43조(지도방문)

① **해양경찰서장**은 **분기별** 지도방문 계획을 수립하여 파출소등의 근무실태 및 운영 전반을 점검·지도하고,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·개선해야 한다.

② 지도방문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.

▌지도방문 시 중점 확인사항

1. 파출소등의 복무관리 이행 여부 및 근무 실태
2. 해양경찰 주요정책 등 각종 지시사항 이행 여부
3. 현장 업무의 모범사례 및 우수 공적 발굴·확산
4. 파출소등의 애로·건의사항 청취 등

✕ (구) 법령

~~1. 창의성과 우수성이 뛰어난 공적 발굴·장려~~

▌제44조(문서 및 부책)

파출소등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 및 부책을 비치해야 한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문서는 현장업무포털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▌파출소 비치 문서 및 부책

1. 근무일지 **(현장업무포털시스템 갈음 가능)**
2. 사건사고 처리대장 **(현장업무포털시스템 갈음 가능)**
3. 암호자재 점검기록부
4. 통고처분 처리부
5. 관서운영경비 증거서류

(선박출입항 기록부 ×, 민원처리 사건부 ×)

(비밀관리기록부 ×,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×)

▌제45조(근무일지 작성 및 보관)

① 파출소등 근무자는 근무내용, 교육·훈련 결과 및 제34조에 따른 근무내용의 변경사항 등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근무일지에 입력해야 한다. 다만, 현장업무포털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근무일지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.

✕ (구) 법령

① ~~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~~은 근무내용 및 교육·훈련 결과 등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~~근무일지에 입력해야~~ 한다. 다만, 현장업무포털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근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.

② 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은 근무일지 작성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, 기재 사항의 누락 또는 부실 등이 확인된 경우 즉시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.

③ 기록한 근무일지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▌제46조(사무 간소화)

①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**연 2회** 파출소등의 행정사무 실태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행정사무를 줄여야 한다.

② 해양경찰서 각 과장은 파출소등에 각종 현황 및 통계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도록 지시할 경우에는 미리 해양안전과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지시의 효력은 해양안전과장의 협조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소멸한다. 다만, 지시의 효력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양안전과장과 협의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

✕ (구) 법령

③ 제2항에 따른 지시의 효력은 해양안전과장이 최초로 협조를 받은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. 다만, 그 효력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양안전과장의 협조와 ~~해양경찰서장의 승인~~을 받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

[별표1의3]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

1.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 [P.200]

주관기관	재난 및 사고의 유형
기후에너지환경부	1.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. 하천·호소 등의 조류 대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☑ 녹조, 적조 등 (해)조류가 크게 증식하는 것

***개정사항** ▌환경부 → 기후에너지환경부 [25.10.01 시행]

40. 다음 중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)」상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[P.221]

▌25년 상반기 해경학과

① 기후에너지환경부 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풍수해 중 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

② 원자력안전위원회 -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
③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-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
④ 해양수산부 -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(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하며, 해양오염은 제외한다)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

정답 ▌①

해설 ▌

풍수해 중 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한다.

05 정보 · 보안 · 외사

추록본

02.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를 때 ( )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연결된 것은? [P.426]

▌해경실무

•남북한 교역을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( 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•남한과 북한의 거래는 ( )의 거래로 본다. •남북방문 시에는 ( ) 발급의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.

① 통일부장관 - 민족내부 - 통일부장관
② 통일부장관 - 민족내부 - 국가정보원
③ 통일부장관 - 국가 간 - 재정경제부장관
④ 재정경제부장관 - 국가 간 - 통일부장관

정답 ▌①

「등불쌤 학원」 해경학개론 각론 추록본

01 해양경비법

추록본

제2장 해양경비 활동

▌국제협력(제9조) [P.525]

▌시행령 제3조의2(용도폐지된 함정의 양여)

②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.

1. 재정경제부장관

***개정사항▌** 기획재정부장관 → 재정경제부장관 [26.01.02 시행]

2. 외교부장관
3. 국방부장관
4. 방위사업청장
5.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

10. 다음 중 「해양경비법(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)」상 함정의 양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▌24년 경장 승진 [P.533, P.574]

① 해양경찰청장은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 폐지된 함정을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.

② 해양경찰청장은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개발도상국과의 외교•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.

③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의 선정 기준과 방법 및 구체적인 양여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해양경찰청장은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, 외교부장관, 국방부장관, 방위사업청장 및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.

정답▌ ④

해설▌ 협의할 수 있다 (×) → 협의해야 한다.(○)

「등불쌤 학원」 해경학개론 각론 추록본

04 수상구조법

추록본

수상구조사 [P.652]

수상구조사(제30조의2)

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[25.12.21.시행]

②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(이하 교육기관)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
☑ [시행규칙 별표 6] **교육시간 1급 64시간, 2급 40시간**

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(시행령 제30조의3)

1.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수시로 실시한다.
2. 해양경찰청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 일시·장소 및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**2개월 전까지 공고**하여야 한다.
3. 해양경찰청장은 공고된 내용대로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**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**해야 한다.
4.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자격증의 발급(시행규칙 제12조의4)

지방해양경찰청장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일부터 **14일 이내에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발급**하여야 한다.

③ 수상구조사의 등급은 지도사·1급·2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신설 25.12.21.시행]

④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증(이하 "자격증"이라 한다)을 발급하여야 한다. [제3항에서 제4항으로 변경]

⑤ 수상구조사 자격의 효력은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발생한다. [제4항에서 제5항으로 변경]

⑥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30조의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 [제5항에서 제6항으로 변경]

⑦ 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험과목, 시험방법,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, 교육과정, 관리·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[제6항에서 제7항으로 변경]

⑧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[신설 25.12.21.시행]

✕ **(구) 법령**

제30조의2(수상구조사)

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**구조하고**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
수상구조사 시험

시험방법 및 시험과목(시행령 제30조의4)

① 자격시험의 실시방법은 수상구조사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수상구조사 지도사: 면접시험
2. 수상구조사 1급 및 2급: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

② 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.

③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수상구조사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수상구조사 지도사: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
2. 수상구조사 1급: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
   - 가.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8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
   - 나. 실기시험에서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,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각각 득점할 것

3. 수상구조사 2급: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

가. 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

나. 실기시험에서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,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각각 득점할 것

▌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(시행령 제30조의7)

별표1의2

1. 자격기준

등급	자격기준
수상구조사 지도사	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상구조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뒤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구조사 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
수상구조사 1급	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) 교육기관에서 수상구조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구조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2) 수상구조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상구조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뒤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구조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
수상구조사 2급	교육기관에서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구조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

별표1의2

2. 업무수행 범위

등급	자격기준
수상구조사 지도사	1) 수상에서의 인명구조에 관한 수상구조사의 활동 지침 수립 2) 수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 · 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3) 수상구조사 지도사 · 1급 · 2급 인력에 대한 관리 · 감독 및 교육 · 훈련 · 평가 4) 수상구조사 1급 · 2급의 업무
수상구조사 1급	1) 수상에서의 인명구조에 관한 수상구조사의 활동 지침 수립 지원 2) 수상구조사 2급 인력에 대한 관리 · 감독 3) 수상구조사 2급의 업무
수상구조사 2급	1) 수상에서의 인명구조 2) 수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 3) 수상안전 시설 및 장비의 운용 · 점검

▌자격시험 수수료

▌자격시험 수수료(시행규칙 제12조의9)

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30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.

1.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: 1만원
2. 실기시험 응시 수수료: 3만원
3. 면접시험 응시 수수료: 5만원

개정

▌지정 교육기관 [P.653]

▌교육기관의 지정(시행규칙 제12조의5)

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(이하 지정기준)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수상구조사 교육기관(이하 교육기관)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. 이 경우 수상구조사 1급 · 2급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 · 고시해야 한다.

▌자격유지(제30조의7) - 보수교육

▌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

1. 최초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[25.12.21.시행]
2.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[25.12.21.시행]

∗ 개정사항▌ [25.12.21.시행]

보수교육기간 2년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→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

시행규칙 제12조의11 [P.654]

▌수상구조사 보수교육

③ 보수교육을 미리 받거나 연기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사전이수(연기)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제4항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)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보수교육을 미리 받으려는 경우: 보수교육 기간 시작일 3일 전까지 [25.12.21개정]

∗ 개정사항▌

개정 전 : 자격 만료일 6개월 전까지

2. 보수교육을 연기하려는 경우: 보수교육 기간 만료일까지

요약정리 : 수상구조사

자격부여	해양경찰청장
응시자격	1급 64시간, 2급 4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 후 시험합격
자격증	발급 14일 이내 / 반납 15일 이내
보수교육	-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- 6개월 범위 연기 가능 - 보수교육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자격 정지 (단, 자격정지 후 1년 이내 보수교육 받으면 효력 발생)
지정교육기관	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7일 이내 / 반납 14일 이내

문제개정

01. 다음 중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(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)」 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[P.652, P.701-#61]

▌23년 경사 승진 [법령개정]

① 최초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,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②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은 수상구조사가 될 수 없다.

③ 수상구조사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4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④ 해양경찰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

정답▌ ③

해설▌ 수상구조사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6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
14. 다음 ( )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맞는 것은?

▌18년 경사 승진 [법령개정] **[P.659]**

㉠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 일시·장소 및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( ) 개월 전까지 공고 하여야 한다.

㉡ 수상구조사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기관에서 ( ) 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 하여야 한다.

㉢ 수상구조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시험이 정지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( ) 년간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
① 52 ② 55 ③ 68 ④ 70

정답▌ ③

해설▌ 2개월 / 64시간 / 2년

㉠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 일시·장소 및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(2)개월 전까지 공고 하여야 한다.

㉡ 수상구조사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기관에서 (64) 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 하여야 한다.

㉢ 수상구조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시험이 정지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(2)년 간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.

16.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(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)」상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▌등불 15기 파이널 [법령개정] **[P.659]**

① 수상구조사 1급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6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해양경찰청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 일시·장소 및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해양경찰청장은 공고된 내용대로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.

④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연 2회 실시한다.

정답▌ ④

해설▌ ④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수시로 실시한다.

24.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상 수상구조사에 관한 설명이다.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▌18년 1차 기출 [법령개정] **[P.676]**

① 수상구조사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단체 또는 기관에서 4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해양경찰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

③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은 수상구조사가 될 수 없다.

④ 최초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정답 ▌①

해설 ▌

64시간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☑ [시행규칙 별표 6] **교육시간 1급 64시간, 2급 40시간**